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 규 선 의원 발의】



2018.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호로 2018년 8월 31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제3조)
- 나.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및 비용부담 (안 제4조 ~ 제5조)
- 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안 제6조)
- 라. 공공조형물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설치 부지면적 (안 제7조 ~ 제8조)

마.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안 제9조)

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심의예외, 이의신청(안 제10조 ~ 제12조)

사.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3조)

아.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3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5조에서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신청서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며 공공조형물은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설치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부지면적은 주변 환경의 조화 및 균형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심의 예외, 이의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
-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관리와 설치주체에 대한 지도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나 안전사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조화로운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민간지원 및 영등포 디자인상 수여에 관한 사항
8.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10.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서울형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은 제외
11. 그 밖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